

## 프리드리히 엥겔스

[서문]

여기에 인쇄된 수고——브라케에게 보낸 첨부 서한과 강령 초안 비판——은 1875년에 고타 통합 대회<sup>[167]</sup> 직전에 맑스가 브라케에게 보내서 가이프, 아우어, 베벨, 리프크네히트 등에게 통지한 후에 반송해 달라고 한 것이다. 할레 당 대회<sup>[168]</sup>가 고타 강령에 대한 토의를 당의 의사 일정에 올렸기 때문에, 이 토의에 관계되는 중요한——아마도 가장 중요한——이 문건의 공표들이 이상 억류한다는 것은 일종의 은닉 행위를 지지하는 일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수고는 다른 더 광범한 의의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라살레가 신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취해 온 방침에 대한 맑스의 입장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게다가 라살레의 경제학적 원칙과 전술 모두에 대해서도 그렇다.

여기서 강령 초안은 무자비한 만큼 신랄하게 해체되고 있으며, 얻어진 결과는 가차없이 진술되고 있으며, 초안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십오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해칠 수 없다. 특유의 라살레 피는 지금은 뿔뿔이 흩어진 폐간병으로서 국외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고타 강령은 할레에서 그 창작자들에게까지 전혀 쓸 만하지 못하다고 버림받았다.

그렇다 해도 나는, 문제의 핵심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는 인신에 관련된 몇몇 신랄한 표현과 평가를 생략하고 그것을 점들로 바꾸어 놓았다. 맑스 자신이 오늘날 이 수고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이 수고의 곳곳에 있는 격렬한 말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로, 맑스와 나는 그 어떤 나라의 운동보다도 독일의 운동에 밀접히 얽혀 있었다; 그러므로 이 강령 초안에 표명된 결정적인 퇴보는 우리를 특히 격렬하게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둘째로, 인터내셔널 헤이그 대회<sup>[11]</sup> 이후 겨우 두 해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에 우리는 비쿠닌 및 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일에서 노동자 운동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강령의 숨은 킨아버지의 지위를 전가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지금은 사라졌으며, 이와 함께 해당 구절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또한 출판 법 때문에 몇몇 문장들은 점들로만 나타나 있다. 더 부드러운 표현을 택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꺾쇠 괄호 안에 넣었다.<sup>[169]</sup> 그 밖에 원문은 글자 그대로이다.

1891년 1월 6일, 런던

Fr. 엥겔스

출전: 『신시대』,  
제9년차, 1890/1891년, 제1권, 18호.

맑스·엥겔스 저작집,  
제22권, 90/91면.

## 칼 맑스

### [빌헬름 브라케에게 보내는 서한]

1875년 5월 5일, 런던

친애하는 브라케,

합동 강령에 대한 다음의 비판적 평주를 통독한 후에, 가이프와 아우어, 베텔과 리프크네히트가 보도록 통지했으면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부득이한 경우에 이 초고가 나의 뜻대로 처분되도록, 이 초고는 반드시 당신 손으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의사가 지시한 양의 노동을 이미 훨씬 더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장황하고 쓸모 없는 글을 쓰는 일은 나에게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를 받게 될 당 내의 친구들이 내 측에서 나중에 취하게 될 조치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동 대회<sup>1671</sup> 후에 영겔스와 나는 말하자면 간단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위에서 말한 원칙 강령에 우리는 완전히 국외자이며 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결한 이유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아이제나하 당의 운동을 여기에서 비밀리에 조종하고 있다며 당의 적들이 용의주도하게 조장한 견해——완전히 그릇된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

다. 바쿠닌은 최근에 발행된 러시아 어 저술에서도, 여컨대 저 당의 강령 전체 통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프크네히트가 인민당<sup>[170]</sup>과 협력한 날부터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sup>[171]</sup>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의 확신에 따르면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당을 타락시키는 것인 그러한 강령을 외교적 침묵으로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현실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다스의 강령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이게나하 강령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없었다면 — 그런데 세 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 —, 그저 공동의 적에 반대하는 행동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 강령을 (더 장기간의 공동 활동을 거쳐 준비될 때까지 유예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그것은 당 운동의 높이를 가늠하는 이정표를 전세계 앞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라살레 파 우두머리들이 온 것은 사정이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칙에 대해 어떠한 흥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초부터 그들에게 밝혔더라면, 그들은 행동 강령이나 공동 행동을 위한 조직 계획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그들이 위임장으로 무장하고 출석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이 편에서 이 위임장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은 타협 대회 전에 또 한 번 대회를 열고 있음에 반해, 본래의 당은 진치를 끝내 후에야 자신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비판을 사라지게 하고, 본래의 당에게 숙고할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통합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노동자들이 만족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일시적인 성공이 너무나 비싸게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잘못입니다.

그 밖에도 강령은, 라살레 파의 신조를 성도 명부聖徒名簿에 올리는 것을 드외시한다 하더라도 쓸모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자본』 프랑스 어 판의 마지막 분책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금지령 때문에 인쇄의 진행이 오랫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끝날 것입니다. 앞 부분의 분책 6 권은

받았는지요? 베른하르트 베커에게도 마지막 분책들을 보내야 하겠으니, 그의 주소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인민 국가” 서점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윌른 공산주의자 재관』의 재판<sup>172</sup>을 나에게 아직까지 한 부도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심으로 인사를 드리며,

당신의  
칼 맑스

수고에 의거함.

맑스·엔겔스 저작집,  
제34권, 137/138면.

## 칼 맑스

###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평주

#### I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속한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사용 가치(그리고, 확실히 이것으로 물질 부는 이루어진다!)의 원천이며, 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의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 위의 문구는 모든 어린이용 입문서에서 발견되며, 노동이 그에 필요한 대상 및 수단과 더불어 수행된다고 가정하는 한에서 옳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강령은,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 조건들에 대해 말이 없는 그러한 부르주아적 말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예초부터 모든 노동 수단 및 노동 대상의 일차적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즉 자연을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노동은 사용 가치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또한 부의 원천이 된다. 부르주아들에게는, 노동에 초자연적인 창조력이 있다고 덮어씌울 매우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이 자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바로 그 점으로부터,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다

큰 어떠한 소유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간은 어떠한 사회 상태와 문화 상태에서도, 대상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가 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의 사람은 뒤의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노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지금은 이 문장이 서 있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절름발이인 채로 두기로 하자. 최종 결론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는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므로, 사회에서 누구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고서는 부를 전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노동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문화 또한 타인의 노동을 대가로 전유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런데……”으로라는 말로 못질을 하여 두 번째 문장을 덧붙이고 있으니, 이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 문단의 두 번째 부분: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회도 노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은 거꾸로, 어떠한 “유익한” 노동도 사회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듣게 된다. 1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만, 무익하고 심지어 공공에 유해한 노동이 하나의 생업 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에서만 무위 도식을 할 수 있다, 등등——요컨대, 루소 전체를 베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이란 무엇인가? 목표로 했던 유익한 효과를 낳는 노동일 뿐이다. 돌로 짐승을 쓰러뜨리고 열매를 모으는 등등의 일을 하는 야만인——그런데 인간은 원숭이이기를 그친 후에는 야만인이다——은 “유익한” 노동을 행한다.

세 번째: 최종 결론: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

회 성원들에게 속한다.”

훌륭한 결론이다! 유익한 노동이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노동 수익은 사회에 속한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에게는, 그 가운데서 노동의 “조건”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만큼만 돌아간다.

사실 이 명제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때 그때의 사회 상태의 수호자들에게 의해 통용되어 왔다. 우선, 정부와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각종 사적 소유자들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종 사적 소유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등등. 보다시피,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문구는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표현되어야만 조금 이나마 조리에 닿는 연관을 지니게 된다: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

이 문장은 논쟁의 여지도 없이 올바르며, 그 이유는 개별화된 노동(그 물질적 조건들을 진계로 하면)이 비록 사용 가치를 창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부나 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른 문장 또한 논쟁의 여지도 없이 올바르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역사 전체의 법칙이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이나 “사회라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뉘소리를 늘어놓는 대신에, 여기서는 노동자들에게 저 역사적 저주를 타파할 능력을 주고 또 타파하도록 그들을 강제하는 물질적 등등의 조건들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마침내 창조되는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그릇된 이 단락 전체가 있는 이유는 사실상, “온전한 노동 수익”이라는 라팔레의 표어를 당의 기치의 정점에 슬로건으로 써 넣기 위함일 뿐이다. 나는 나중에 “노동 수익”, “평등한 권리”



등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이 다소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 수단은 자본가 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 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측 상태의 원인이다."

인터내셔널의 규약<sup>173)</sup>에서 빌어 쓴 이 명제는 이 "개정" 관에서는 잘 못되어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 수단은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의 독점을 더구나 자본 독점의 토대이다)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인터내셔널의 규약은 해당 구절에서 전자나 후자의 독점자 계급을 거명하지 않는다. 규약은 "노동 수단들의, 즉 생활 원천들의 독점"에 대해 말한다; "생활 원천들"이라고 보충한 이 말은, 토지도 노동 수단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개정이 끼어든 것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로 라살레가 자본가 계급만 공격하고 토지 소유자는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자본가들은 대부분, 자기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다.

3. "노동의 해방은 노동 수단의 사회의 공동 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노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노동 수단의 공동 재산으로의 고양"! 아마도 노동 수단의 "공동 재산으로의 전화"를 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다.

"노동 수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생산물인가 아니면 그 가치인가? 또 후자의 경우라면, 생산물의 총가치인가 아니면 다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에 노동이 새로이 덧붙인 가치 부분만인가?

"노동 수익"이란, 라살레가 명확한 경제학적 개념 대신에 사용한 막연한 표상이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부르주아들은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오늘날의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 경제 관계가 법 개념에 의해 규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법 관계가 경제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사회주의 증과 집단들은 "공정한" 분배에 관해 서로 다른 표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공정한 분배"라는 문구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지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첫 번째 문단과 이 문단을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단은 "노동 수단이 공동 재산이며 총노동이 조합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가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는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본다.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온전한 노동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노동하는 사회 성원들에게만? 그렇다면 모든 사회 성원들의 "평등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모든 사회 성원들"이니 "평등한 권리"니 하는 것은 분명히 헛소리일 뿐이다. 핵심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노동자는 자신의 "온전한" 라살레 식의 "노동 수익"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만일 우리가 "노동 수익"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조합적 노동 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소모된 생산 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둘째: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셋째: 사고, 자연 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 기금.

"온전한 노동 수익"으로부터의 이러한 공제는 경제상의 필연이며, 그리고 그것의 크기는 수중에 있는 수단과 역량에 따라 결정되고 부분적으로는 확률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공정성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소비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개인에게 분할되기 이전에, 그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시 빼내어진다:

첫째: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 비용.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면 애초부터 극히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둘째: 학교나 위생 설비 등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게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면 애초부터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셋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등을 위한 기금, 요컨대 오늘날의 이른바 공공 빈민 구제에 속하는 것.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강령이 타살레의 영향 아래에서 편협하게 육안으로만 파악하는 “분배”에, 즉 조합의 개별 생산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소비 수단 부분에 이르게 된다.

비록 사인私人의 자격으로서의 생산자이게서 빠져 나가는 것이 사회 성원 자격으로서의 그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온전한 노동 수익”은 은연 중에 이미 “온전치 못한” 것으로 전화하였다.

“온전한 노동 수익”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듯이, 이제는 “노동 수익”이라는 문구 일반이 사라진다.

생산 수단을 공유 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즉 그 생산물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 모호한 의미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노동 수익”이라는 말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며, 그러므로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리드 둘러붙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이에 걸맞게

개별 생산자는 자신이 사회에 주는 것을——공제 후에——정확히 돌려 받는다. 그가 사회에 주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 시간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인적 노동 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자신의 몫이다. 그는 자신이 (사회 기금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공제한 후에) 이리이러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이 증서를 가지고 소비 수단의 사회적 저장장에서 동일한 양의 노동이 비용을 들인 만큼을 빼내 간다. 그는 어떤 형태로 사회에 준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되받는다.

상품 교환이 같은 가치물의 교환인 한, 여기서서는 분명히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변한 사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소비 수단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 수단의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여,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을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등한 권리는 여전히——원리상——부르주아적 권리이며, 상품 교환에서는 등가물의 교환이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원리와 실재가 이제는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우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와 같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한 권리에는 아직도 부르주아적 제한이 들러붙어 있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 계급에 비례한다;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이 척도 노릇을 하려면 연장이나 강도로 볼 때 일정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척도이기를 중지한다. 이러한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권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계급 차이도 승인하지 않는데, 왜냐 하면 각각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암묵적으로 개인의 불평등한 소질을 승인하며, 따라서 노동자의 실행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승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가 다 그렇듯이 내구성 불평등의 권리이다. 그 권리의 요체는 본성상, 오직 동일한 척도의 적용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개인들(만일, 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아닐 것이다)이 동일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동일한 관점 아래 놓이는 한에서, 즉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만 파악되는 한에서이며, 예컨대 이 경우에 그들은 노동자로서만 간주되고 그들에게서 그 이상의 것은 보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들은 도외시된다. 나아가: 어떤 노동자는 결혼하였는데, 다른 노동자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자식이 많다, 등등. 그러므로 동일한 노동을 실행하고 따라서 사회적 소비 기금에 대해 동일한 몫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된다, 등등. 이러한 모든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은,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이 형태가 제약하는 문화 발전보다 결코 더 높은 수준일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본업에 복종하는 예측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권이 흘러 넘치고 난 후에——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것밖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내가 한편으로는 “은전한 노동 수익”을,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장황하게 다룬 것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빠진 잡소리가 되어 버린 표상들을 다시 교리로서 우리 당에 강요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에 가져올 때는 교생이 많았으나 부

리를 박은 현실주의적 파악을 다시 민주주의자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적 권리설이나 다른 속임수를 통해 왜곡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까지 개진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 수단의 그때 그때의 분배는 생산 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 조건의 분배는 생산 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물질 생산 조건들은 자본 소유와 토지 소유의 형태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반면에 대중은 인적 생산 조건인 노동력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생산의 요소들이 이렇게 분배되면, 오늘날과 같은 소비 수단의 분배가 저절로 생겨난다. 물질 생산 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조합적 소유가 되면, 오늘날과는 다른 소비 수단의 분배가 생겨난다. 속류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본받아(그리고 이를 다시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 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주로 분배를 중심 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진정한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해명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첫 연講은 인터내셔널의 규약의 머리글에서 따온 것이지만, “개정되어” 있다.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일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와 반대로 “노동자 계급이” 해방해야 한다——무엇을? “노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해 보라.

반면에, 손해 배상을 위해 대구회句는 극히 순수한 라살레 인용문이다: “이들(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다.”

『공산주의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

급이다. 그 밖의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하고 몰락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대공업의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sup>176)</sup>

부르주아지는 여기서, 낡아빠진 생산 방식의 형성물인 모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봉건 영주들과 중간 신분들과는 달리 혁명적 계급으로 — 대공업의 담지자로서 —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봉건 영주들과 중간 신분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인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비해 혁명적인 것은 대공업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주아지가 영구화하려고 시도하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에서 벗겨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덧붙여 있다: “중간 신분들은…… 자신들에게 압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목도하여……혁명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간 신분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더구나 봉건 영주들과 함께,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사람들이 최근의 선거에서 수공업자, 소기업가 등등과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는 것인가: 당신들은 부르주아와 봉건 영주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다?

라살레 신봉자들이 라살레가 작성한 성스러운 저술을 암기하고 있듯이, 라살레는 「공산주의당 선언」을 암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공산주의당 선언」을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왜곡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지에 맞서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적들과 자신이 동맹을 맺고 있음을 일버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위의 문단에서는, 인터내셔널의 규약으로부터 개약된 인용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의 금언이 억지로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여기서는 그저 뻔뻔스러운 것이며, 더구나 이것은 비스마르크 씨에게도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며, 베를린의 마라<sup>175)</sup>가 하고 있는 저 버릇 없는 싸구려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5.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테

‘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라살레는 「공산주의당 선언」이나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노동자 운동을 가장 편협한 민족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라살레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것도, 인터내셔널의 활동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도대체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계급으로서 조직되어야 하며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인 무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런 한에서, 그들의 계급 투쟁은 내용상으르가 아니라, 「공산주의당 선언」에 쓰여 있듯이 “형식상으르” 일국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테두리”, 예를 들면 독일 제국의 테두리는, 그 자체가 다시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체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일류급의 상인이라면 누구나, 독일의 상업은 동시에 대외 무역이며 비스마르크 씨의 위대함의 요체는 바로 일종의 국제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국제주의를 무엇으로 환원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의식으로—— 이는 부르주아의 평화-자유 동맹<sup>78)</sup>에서 빌어 쓴 문구이니, 그들은 이것이 지배 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맞선 공동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들의 국제적 친목에 대한 등가물로 통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직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그리고 독일 노동자 계급은, 이미 자신들에 맞서 다른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와 친교를 맺은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지와 비스마르크 씨의 국제적 음모 정책에 그렇게 양갈음을 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강령의 국제주의 신념의 표명은 자유 무역당의 그것보다 무한히 낮은 수준에 있다. 자유 무역당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상업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있으며, 결코 다음과 같은 의식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들은 자국에서 상업에 종사한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 노동자 협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협회는 그러한 활동에 하나의 중앙 기관을 창설해 주는 첫 시도일 뿐이었다; 이 시도는 그것이 가져다 준 자극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파리 코뮌이 몰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최초의 역사적 형태로는 수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독일 노동자당이 새 강령에서 국제주의를 저버렸다고 비스마르크의 『북독일』이 자신의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알렸다면, 이는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 II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 및 —— 사회주의 사회; 철의 임금 법칙과 함께 임금 제도 —— 및 ——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자유로운" 국가로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로 하자.

이리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장래에 라살레의 "철의 임금 법칙"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빼놓지 않기 위하여, "철의 임금 법칙과 함께 임금 제도"(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임금 노동 제도)의 폐지"라는 어불성설을 말하고 있다. 내가 임금 노동을 폐지한다면, 나는 당연히 "철의" 법칙이건 해면의 법칙이건 그 법칙도 폐지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 노동에 대한 라살레의 투쟁은 거의 이 이른바 법칙만을 중심 문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살레 종파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의 임금 법칙과 함께 임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임금 법칙 없이 임금 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철의 임금 법칙" 가운데에서 라살레에게 속하는 것은, 피테의 "영원한 철의 위대한 법칙"에서 빌어 쓴 "철의"라는 말뿐이다. 철의라는 말은 정교 신자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 법칙을 라살레의 도장이 찍힌 대로, 따라서 라살레의 의미대로 받아들인다

면, 나는 또한 그것을 그의 논거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의 논거란 무엇인가? 라살레가 죽은 직후에 랑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랑에 자신이 설교한 바 있는) 맬더스의 인구 이론<sup>[176]</sup>. 그러나 이것이 옳다면, 설사 내가 임금 노동을 백 번 폐지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법칙을 폐지할 수는 없으며, 그 이유는 이 법칙이 옳다면 그것은 임금 노동 제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오십 년이 넘도록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는 자연에 기초한 빈곤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표면 전체에 분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법칙을 라살레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제쳐놓더라도, 진짜 파썸한 퇴보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라살레가 죽은 이래로 우리 당 내에는, 임금이란 외견상 그런 것, 즉 노동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의 가망된 형태일 뿐이라는 과학적 통찰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임금에 대한 이제까지의 부르주아적 파악 전체와 이러한 파악을 겨냥한 이제까지의 비판 전체는 일거에 허물어지고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명백해졌다. 임금 노동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공짜로 자본가를 위해 (따라서 그와 잉여 가치를 함께 먹어 치우는 자를 위해서도) 노동하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 노동하는 것, 즉 생활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제도 전체는, 노동일의 연장이나 생산성의 발전, 노동력의 더욱 큰 긴장 등등을 통하여 이러한 무상 노동을 늘리는 것을 중심 문제로 한다; 따라서 임금 노동 제도는 노예 제도이며, 게다가 노동자가 수령하는 지불금이 좋건 나쁘건 간에 사회적 노동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더욱더 가혹해지는 노예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당에 이러한 통찰이 더욱더 자리를 잡은 후에도, 사람들은 라살레가 임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따라다니며 외양을 사태의 본질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살레의 교의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노예제의 비밀을 드디어 간파하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가운데 남아있는 표상에 사로잡힌 한 노예가 반란의 강령에 다음과 같이 써넣는 것과 같다: 노예 제도에서의 노예 급양은 일정한 최저 수준을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에,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대표들이 당원 대중들에게 유포되어 있는 통찰에 대해 것처럼 끔찍한 암살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 경솔함으로 또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타협 강령의 작성에 착수하였는지가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이 문단의 불명확한 마지막 문구인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대신에, 계급 차이의 폐지와 더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도 저절로 소멸한다는 점을 말해야 했다.

### III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 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기 위하여, 근로 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는 생산 협동 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 협동 조합은, 그것들에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발생할 정도로 규모로 공업과 농경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

라살레의 “철의 임금 법칙”에 뒤이은 예언자의 구원책! 그에 어울리게 “길이 나 있다!” 실존하는 계급 투쟁 자리를 신문 기자들의 공문구가 대신한다——“해결”의 “길이 나고 있는” “사회 문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 과정에서 아니라 국가가 생산 협동 조합에 주는 “국가 보조”에서 “발생하며”, 이 생산 협동 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겨나게 한다”. 이는, 새 철도처럼 새 사회도 국채로 건설할 수 있다는 라살레의 훌륭한 상상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도 <일말의> 수치심으로 인해, “국가 보조”를——“근로 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

첫째, 독일의 “근로 인민”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지 프롤레타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주의적 demokratisch”이란 말은 독일어로 “인민이 지배하

는 volksherrschafflich"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근로 인민의 인민이 지배하는 통제"란 무슨 뜻인가? 더구나, 국가에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를 통해, 자신들이 지배권을 쥐고 있지도 않으며 지배권을 쥘 만큼 성숙하지도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밝히는 근로 인민의 경우에!

루이-폴립 치하에서 뤼세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작성하였고 「작업장」의 반동적 노동자들이 채택한 처방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주요한 충격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독특한 특효약을 강령에 써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람들이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종파 운동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규모로, 또 우선 자국에서, 따라서 일국적 규모로 [auf] 조합적 생산을 위한 조건을 갖추려 한다는 것은 다만 그들이 지금의 생산 조건의 변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국가 보조를 받는 협동 조합의 창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협동 조합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정부로부터도 부르주아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노동자들의 창조물인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 IV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편으로 넘어간다.

##### A.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우선 제2절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당은 "자유로운 국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 이것은 무엇인가?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복의 천박한 지혜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독일 제국에서 "국가"는 러시아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자유롭다". 자유의 요체는 국가를 사회보다 상위의 기관에서 사회보다 완전히 하위의 기관으로 전화시키는 데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형태는 그것이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롭거나 자유를

지 못하거나 한다.

독일 노동자당은—— 이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적어도——, 현존 사회(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회에도 통용된다)를 현존 국가(혹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미래 국가)의 기초로 취급하는 대신에 도리어 국가를 그 소유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자유로운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립적인 본질로 취급함으로써, 당에 한 번도 사회주의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구나 강령은 “오늘날의 국가”나 “오늘날의 사회”니 하는 말을 난잡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강령이 요구를 제기하는 상대인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한심한 오해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이 사회는 모든 문명국에 실존하고 있으며, 많은 적든 중세기의 혼란물로부터 자유롭고, 많은 적든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을 통해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적든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국가”는 국경과 함께 변한다. 그것은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는 스위스에서와 다르며, 영국에서는 합중국에서와 다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국들의 서로 다른 국가들은, 다채로운 형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많은 적든 자본주의적으로만 발전한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기반 위에서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일정한 본질적 특성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가 제도”를 그 지금의 뿌리인 부르주아 사회가 사멸한 미래와 대비하여 말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국가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환을 겪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국가 기능과 유사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이 거기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인민이라는 말에다 국가라는 말을 수천 번 결합하여도 비록이 편 만큼도 문제에 근접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니,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

다.

그런데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와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의 국가 제도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령의 정치적 요구에는 온 세상이 아는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장황한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통 선거권, 직접적인 입법, 민권, 인민 무장, 등등. 그런 것들은 부르주아적인 인민당이나 평화-자유 동맹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 떠들썩한 요구들은, 환상적 표상 속에서 과장된 것이 아닌 한 이미 실현된 것이다. 다만, 그것들을 포괄하는 국가가 독일 제국의 경계 내부에 있지 않고 스위스나 합중국 등등에 있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미래 국가”는, 비록 독일 제국의 “태두리” 외부에 실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국가이다.

그러나 있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독일 노동자당은 “오늘날의 민족 국가” 내부에서, 따라서 자신의 국가인 프로이센-독일 제국 내부에서 활동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므로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요구도 대부분 무의미할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당은 저 모든 벗진 장식품들이 이른바 인민 주권의 승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만 제자리를 찾는다는 중요한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루이-필립과 루이-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의 노동자 강령들이 했듯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므로<sup>[17]</sup> — 그런데 상황이 주의를 명하므로 그것이 현명하다 —, <“정직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은> 술책으로 도주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니, 그 술책이라는 것은 의회적 형식으로 치장하고 봉건적인 혼합물이 뒤섞여 있는 동시에 이미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관료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으며 경찰이 지켜 주는 군사 독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국가에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국가에 그러한 것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망상하고 있다고 국가 앞에서 맹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천년 왕국을 보며 또 바로 부르주아 사회의 이 마지막 국가 형태에서 계급 투쟁이 결정적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고는 꿈에

도 생각하지 않는 속류 민주주의조차도——이것조차도, 경찰에 의해서는 허락되고 논리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한계 내부에 있는 그러한 종류의 민주주의에 비하면 산 하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사람들이 사실 “국가”를 정부 기관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의 국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말에 나타나 있다: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누진 소득세, 동등”. 조세는 정부 기관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스위스에 현존하는 미래 국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달성되어 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 계급들의 다양한 소득 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리버폴의 개정 개혁론자들——클레드스틴의 동생들 우두머리로 하는 부르주아들——이 강령과 동일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목을 끄는 일이 아니다.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및 윤리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전반적이고 평등한 국민 교육. 전반적인 취학 의무. 무료 수업.”

평등한 국민 교육?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의 사회(그리고 이것만이 문제이다)에서 교육이 모든 계급에게 평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의 경제 형편에도 맞는 유일한 소량의 교육——국민 학교——으로 상류 계급도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일까?

“전반적인 취학 의무. 무료 수업.” 전자는 독일에도 있으며, 후자는 국민 학교의 경우에 스위스와(und) 합중국에 있다. 합중국의 몇몇 주들에서는 “상류” 수업 시설도 “무료”라면, 그것은 사실 상류 계급들이 자신들의 교육비를 일반 조세 자루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말이나 온 김에 말하자면, A의 5항에서 요구하는 “무료 사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사 재판은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 재판은

거의 소유권 분쟁을 중심 문제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거의 유산 계급 들에게만 관계된다. 인민의 돈 자루를 털어서 그들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는가?

학교에 관한 문단은 적어도, 국민 학교와 결합된 (이론적 및 실천적) 기술 학교를 요구해야 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교육”은 완전히 배척되어야 한다. 일반 법률로 국민 학교의 자원, 교원의 자격, 수업 과목 등등을 규정한다든가 또 합중국에서 하고 있듯이 국가의 감독관을 통하여 이 법률 규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는 똑같이 학교에 대한 어떠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는 정말이지, (그리고 “미래 국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쓸데없는 핑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태가 어떠한지는 살펴본 바 있다) 거꾸로 국가가 국민에 의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령 전체는, 민주주의에 관해 중을 치듯 여러 소리를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라살레 종파의 신민적인 신앙에, 혹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 민주주의의 기적 신앙에 철저히 감열되어 있으니,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와는 똑같이 거리가 먼 두 종류의 기적 신앙 사이의 하나의 타협이라 하겠다.

“학문의 자유”는 프로이센 헌법의 한 구절에 쓰여 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쓰여 있는가?

“양심의 자유”! 만일 문화 투쟁의 이 시기에 자유주의로 하여금 그것의 낡은 표어를 명심하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각자는 경찰의 참견 없이 자신의 종교적 및 육체적 필요<sup>[17]</sup>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어쨌든 이 기회에,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감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도깨비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관한 자신의 의식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르주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채로 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으니, 왜냐하면 이제 강령에서 이어지는 부록은



강령의 특징적인 구성 부분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려 한다.

## "2. 표준 노동일."

다른 어느 나라의 노동자 당도 이러한 불명료한 요구에 그치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표준이라고 간주되는 노동일의 길이를 항상 확정한다.

## "3. 여성 노동의 제한과 아동 노동의 금지."

노동일의 표준화가 노동일의 지속과 휴식 등등에 관한 것인 한, 그것은 이미 여성 노동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그것은 여자의 육체에 특별히 건강상 유해하거나 혹은 여자에게는 도의에 반하는 노동 부문에서의 여성 노동의 제의를 의미할 뿐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렇게 말해야 했다.

"아동 노동의 금지"! 여기서는 연령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 노동의 전반적인 금지는 대공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허하고 천진 난만한 소망이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 —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 은 반동적인 것이며, 그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동 시간의 엄격한 규제와 아동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예방 조처들이 수반된다면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전파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4. 공장제 공업, 작업장 공업, 가내 공업에 대한 국가의 감시."

프로이센-독일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했다. 감독관들은 재판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노동자는 누구나 감독관을 의무 불이행 혐의로 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 감독관은 의사 자격이 있

는 사람이어야 한다.

“5. 감옥 노동의 규제.”

일반적인 노동자 강령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는 사소한 요구이다. 여하튼, 경정을 두려워하여 일반 범죄자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라고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유일한 교화 수단인 생산적 노동을 그들에게서 차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분명 이것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다.

“6. 효과적인 책무 법.”

“효과적인” 책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말해야 했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표준 노동일에서는 위생 조치나 위험 방지 수단 등등과 관련된 공장 입법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 규정들이 위반되자마자 비로소 책무 법은 효력을 발생한다.

<요컨대, 이 부록 역시 칠칠치 못한 편집으로 두드러진다.>

나는 말하였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구하였노라 *Dixi et salvavi animam meam.*

1875년 4월에서 5월 초까지 씌어짐.  
수고에 의거함.

맑스·엔겔스 저작집,  
제19권, 15-32면.

이수훈 번역